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3981 손해배상(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케이 해자현
담당변호사 이재원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C'이라는 일간지(이하 '원고 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는 전문신문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라는 명칭의 웹사이트(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원들의 원고 작성의 기사 게시

피고 회원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작성한 신문기사(제목, 내용,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이라 한다) 등을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전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각 내용증명 발송

원고는 2025. 7. 29.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본 내용증명은 귀사가 운영 중인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본건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 글과 관련됩니다.

3. 귀사가 운영 중인 본건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글 다수는 주식회사 A(이하 “발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는 현재 발신인 회사의 대리인인 E 법률사무소(이하 “당 사무소”)에서 다수 보관 중에 있으며, 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당 사무소는 ① 귀사에게 본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리는 바이며, 본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사의 손해와 관련하여 금 삼억 원(₩300,000,000)[기사 약 480개 금 이억 사천만 원(₩240,000,000원)+ 이미지 약 75개 금 육천만원(₩60,000,000)]을 본 내용증명 수령 후 오(5)영업일 이내에 발신인 회사의 대리인인 당 사무소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본 항에서 귀사께 청구하는 금원은 발신인 회사의 손해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써 현재 당 사무소는 본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발신인 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입증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 중에 있는바, 추후 귀사께서 발신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피고는 2025. 8. 18. 원고에게 2025. 7. 29.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침해되는 저작물과 그 위치(URL)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에 따라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기사, 이미지의 구체적인 목록(제목, URL 등)을 송부하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회원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는바, 피고는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인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위 주장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은 피고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가 침해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관련 법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 2716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있었거나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에 대한 피고 웹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중단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과 함께 침해행위의 예시가 되는 기사를 1건 첨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원고 신문의 기사가 게시된 예시 글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시물을 특정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내용증명에 기재한 침해 게시물은 '원고 신문 기사'라는 것이어서 그 중 어떤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지는 피고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원고



신문 기사를 검색한 결과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는 2025. 8. 18. 원고에게 '원고의 내용증명에 첨부된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저작물과 그 위치(URL)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기사, 이미지의 제목과 URL을 특정하여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게시물의 제목과 그 URL을 특정하여 회신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의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피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중 일부는 야구 경기에 대한 결과만을 요약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웹사이트에 원고 신문의 기사가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피고 회원들이 게시한 기사 및 사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고 웹사이트에는 하루에 적게는 4,000건부터 많게는 12,000건의 글이 게시



되고 있다. 피고로서는 피고 회원들의 게시물 중 어떤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웹사이트에 원고 신문의 기사가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신문의 기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저작물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규모, 권리침해 신고 건수, 게시물의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정한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피고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F"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기사 전문, 기사 일부 내용, 보도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권리침해에 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의사항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 따라서 피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삭제하고 차단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판사 김선호